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562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정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신정혜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6,589,4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6,589,4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 등은 2018. 6. 4. D, F,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99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2. 3. 원고 등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31156호로 이송되었다. 위 법원은 2020. 9. 16. D, F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원고 등, F은 수원고등법원 2020나2207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30. ‘F, C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158,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 C은 2021. 7. 12.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581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2024. 3. 7. 현재 C에 대하여 146,158,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16,589,406원{= 146,158,126원 + 2018. 4. 22.부터 2021. 6. 30.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3,325,235원[= 146,158,126원 × (3 + 70/365)년 × 5%, 원 미만 버림] + 2021. 7. 1.부터 2024. 3. 7.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7,106,045원[= 146,158,126원 × (2 + 251/366)년 × 12%, 원 미만 버림]}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1) C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260944호로 2019.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2019. 12. 2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5,7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0. 10.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3) 피고는 G에게 2020.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20.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의 적극재산

C은 2019. 12. 23.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5억 2,75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시가 4,200만 원의 오산시 H건물, I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의 합계는 5억 6,950만 원이다.

2) C의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4억 5,780만 원), J협동조합에 대한 오산시 H건물, I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6,600만 원), 원고에 대한 채무 146,158,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K에 대한 채무 99,284,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L에 대한 채무 61,257,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M에 대한 채무 265,437,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있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30. 가집행이 붙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C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인 2021. 6. 30.경에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21. 10. 6. 이전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하는데, 화재의 발생으로 원고는 2018. 4. 22.부터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18. 4. 22.부터 성립되었다.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9. 12. 23.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2021. 6. 30.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는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수탁자인 C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8. N에게 오산시 O을 매도한 후 201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2. 2. 주식회사 P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오산시 O에는 2015. 11. 28. 당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N은 2016. 1. 4.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C과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C과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7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2015. 11. 28. N에게 오산시 O을 13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5. 12. 2.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90,264,000원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별도의 소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오산시 O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분의 1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이 피고에게 오산시 O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의사 여부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C은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제1심 법원은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원고 등이 위 사건에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2019. 12. 3. 청구취지를 확장한 후인 2019.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한 점, C은 2010. 2. 26.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오산시 H건물, I호도 2020. 10. 7. R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20.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등이 2018. 6. 4.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C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C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피고는 2018년 말경부터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C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또는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의 소 제기 후 C이 폭언을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도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C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C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12. 30.에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만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78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0. 10.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216,589,406원(= 원금 146,158,126원 + 지연손해금 23,325,235원 + 지연손해금 47,106,045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3. 7. 1. 당시 14억 1,000만 원인 사실1) 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4억 7,610만 원[= 9억 5,220만 원(= 14억 1,000만 원 - 4억 5,780만 원2)) ÷ 2]이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4억 7,610만 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16,589,406원) 중 작은 금액인 위 216,589,406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16,589,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S에 있는 T아파트 U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2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67.682㎡

1층 442.706㎡

2층 415.006㎡

3층 526.526㎡

4층 526.526㎡

5층 526.526㎡

6층 526.526㎡

7층 526.526㎡

8층 526.526㎡

9층 526.526㎡

10층 526.526㎡

11층 526.526㎡

12층 526.526㎡

13층 526.526㎡

14층 526.526㎡

15층 526.526㎡

16층 526.526㎡

17층 526.526㎡

18층 526.526㎡

19층 526.526㎡

20층 526.526㎡

21층 526.526㎡

22층 526.526㎡

23층 526.526㎡

24층 526.526㎡

25층 526.526㎡

26층 526.526㎡

27층 526.526㎡

28층 526.526㎡

29층 526.526㎡

30층 526.526㎡

31층 253.443㎡

32층 253.4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0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7.0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화성시 S 대 5238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52389분의 59.7233

1) 이 사건 부동산은 전용면적 97.046㎡인데, 원고는 전용면적 97.036㎡인 아파트의 2023년 7월 당시 매매가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2)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주장하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